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0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안광석,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u>①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u></p> <p><u>②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u>“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u></p> <p>2. <u>“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u> ----- --.</p>